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교육 신설〉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77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교육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6.

다. 회 부 일 :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율을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교육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포함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안 제14조의3 제1항).
- 안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8조 제1항 제3호의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¹⁾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9조 제3항).

1) 현재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따라 ICT폴리텍대학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4조의3(공사업의 교육)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다)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u>행정처분의 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행정처분</u> <u>· 감경의 기준</u> ----- -----.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와 제38조제1항</u> ----- ----- ----- -----.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u><신설></u> <u>3의3.</u> (생략) 4. ~ 9. (생략) ②·③ (생략)	제78조(과태료) ①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u> <u>3의4.</u> (현행 제3호의3과 같음)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자본금 등의 조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²⁾³⁾.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상호·명칭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⁴⁾,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⁵⁾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공사업자가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영세 사업자의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를 말함

3)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3년 말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12,351개사 중 11,983개 (9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024년 기준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횟수는 1,241건에 달함.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교육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공사업자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건설공사 관련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 대상 교육제도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을 두고 있음⁶⁾.
- 다만 안 제14조의3 제2항은 신규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이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교육제도는 사업자가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6)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숙지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육 이수 이후에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은 교육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로 앞서 언급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건설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공사업체의 단순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사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 처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 다만,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 의견 수렴·안내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 법제처는 부칙을 통해 신설되는 교육이수 의무를 언제부터 적용할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⁸⁾.

문 의 처
02)6788-5230

8) 유사한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였던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부칙 제2조(건설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